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
----------	----

제출년월일 : 2003. 9. 25.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 가. 을숙도문화회관은 서부산권의 유일한 종합예술공간으로 2002. 10월 개관한 이후 타 문화회관과 사용료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사용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 나. 대공연장 규모(좌석수)가 당초 설계와 다르게 표시되어 변경하려는 것임.
- 다. 전시실을 규모 및 위치상 누구나 알기 쉽도록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 별표 1의 시설사용료 징수기준과 관련하여
 - 1) 기본시설사용료의 전시실(I, II, III)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 나. 대공연장 규모(좌석수) 변경 : 797석 → 708석(장애인석 8석 별도)
- 다. 전시실 명칭 변경 : 제1전시실(108.9㎡) → 제2전시실
제2전시실(261.36㎡) → 제1전시실

3.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별표1의 내용중 “대공연장 규모”와 “전시관리동(지상1층)”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 표]

을숙도문화회관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제8조제1항 관련)

1.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모	단위	사용료		비고
				평일	토.일 공휴일	
대공연장	대공연장	708석 (장애인석 8석 별도)	오전	130,000	300,000	
			오후	180,000	300,000	
			야간	250,000	300,000	
전시 관리동 (지상1층)	제1전시실	261.36㎡	1일	42,000	50,000	
	제2전시실	108.9㎡		17,000	21,000	
	제3전시실	87.12㎡		14,000	17,000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울속도문화회관시설사용료징수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표1] 울속도문화회관시설사용료징수기준(제8조제1항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시 설 구 분		규 모	단 위	사 용 료		비 고	시 설 구 분		규 모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일 공휴일						평 일	토.일 공휴일	
대공연장	대공연장	797석	오전 오후 야간	130,000	300,000		대공연장	대공연장	708석 (장애인석 8석 별도)	오전 오후 야간	---	---	
				180,000	300,000						---	---	
				250,000	300,000						---	---	
전시	제1전시실	108.9㎡	1일	30,000	40,000		전시	제1전시실	261.36㎡	1일	42,000	50,000	
관리동	제2전시실	261.36㎡		90,000	110,000		관리동	제2전시실	108.9㎡		17,000	21,000	
(지상1층)	제3전시실	87.12㎡		20,000	30,000		(지상1층)	제3전시실	87.12㎡		14,000	17,000	